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2
----------	-------

제출년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7.1.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이 2단계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 반영

- 1) “장애등급” → “장애정도”
- 2) “1~3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3) “4~6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9. 5. 9. ~ 5. 16.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동의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라.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9.5.2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8호 중 “1급, 2급 및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장애등급 제2급 이상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중 “중증장애인(1급,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증장애인(1급,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2급 및 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1급, 2급 및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9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별표”

[별표]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5조제1항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자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의 “별표”

[별표]

목욕탕 이용료(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일반인	5,000원	
장애인	3,0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경로우대자	3,000원	
수급자	3,000원	
국가유공자	3,000원	
한부모가족	3,000원	
보호자	3,000원	
미취학 아동	3,000원	
자원봉사자	무료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별표”

[별표]

##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 2. 수강료

#### 나. 감면기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100%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7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등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50%	30%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신설 2019.3.28)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및 외국어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범위)</p> <p>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제5조(지원범위)</p> <p>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의3(할인)</p> <p>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p> <p>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2급 및 3급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p>	<p>제13조의3(할인)</p> <p>① (현행과 같음)</p> <p>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p>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제2급 이상인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별표]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5조제1항 관련)</p>		<p>[별표]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5조제1항 관련)</p>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
1	장애등급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등급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남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남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남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남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3	장애등급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남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p>※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p>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남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남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남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남세 실적이 없는 사람(주민세 개인균등분 제외)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		
<p>※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p>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p> <p>11. “보호자”란 중증장애인(1급, 2급)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동반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8조(이용료 등)</p> <p>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p> <p>6. 중증장애인(1급, 2급)을 동반하는 보호자</p> <p>9. 중증장애인 및 노인 등에게 목욕봉사 등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u>목욕탕 이용료(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이 용 료</th> <th style="width: 7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인</td> <td>5,000원</td> <td></td> </tr> <tr> <td>장애인</td> <td>3,000원</td> <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경로우대자</td> <td>3,000원</td> </tr> <tr> <td>수급자</td> <td>3,000원</td> </tr> <tr> <td>국가유공자</td> <td>3,000원</td> </tr> <tr> <td>한부모가족</td> <td>3,000원</td> </tr> <tr> <td>보호자</td> <td>3,000원</td> </tr> <tr> <td>미취학 아동</td> <td>3,000원</td> </tr> <tr> <td>자원봉사자</td> <td>무료</td> <td>- 중증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목욕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td> </tr> </tbody> </table>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일반인	5,000원		장애인	3,0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경로우대자	3,000원	수급자	3,000원	국가유공자	3,000원	한부모가족	3,000원	보호자	3,000원	미취학 아동	3,000원	자원봉사자	무료	- 중증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목욕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p>제3조(정의)</p> <p>11. “보호자”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동반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8조(이용료 등)</p> <p>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p> <p>6.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p> <p>9.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노인 등에게 목욕봉사 등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u>목욕탕 이용료(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이 용 료</th> <th style="width: 7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인</td> <td>5,000원</td> <td></td> </tr> <tr> <td>장애인</td> <td>3,000원</td> <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경로우대자</td> <td>3,000원</td> </tr> <tr> <td>수급자</td> <td>3,000원</td> </tr> <tr> <td>국가유공자</td> <td>3,000원</td> </tr> <tr> <td>한부모가족</td> <td>3,000원</td> </tr> <tr> <td>보호자</td> <td>3,000원</td> </tr> <tr> <td>미취학 아동</td> <td>3,000원</td> </tr> <tr> <td>자원봉사자</td> <td>무료</td> <td>-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목욕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td> </tr> </tbody> </table>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일반인	5,000원		장애인	3,0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경로우대자	3,000원	수급자	3,000원	국가유공자	3,000원	한부모가족	3,000원	보호자	3,000원	미취학 아동	3,000원	자원봉사자	무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목욕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일반인	5,000원																																																
장애인	3,0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경로우대자	3,000원																																																
수급자	3,000원																																																
국가유공자	3,000원																																																
한부모가족	3,000원																																																
보호자	3,000원																																																
미취학 아동	3,000원																																																
자원봉사자	무료		- 중증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목욕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일반인	5,000원																																																
장애인	3,0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경로우대자	3,000원																																																
수급자	3,000원																																																
국가유공자	3,000원																																																
한부모가족	3,000원																																																
보호자	3,000원																																																
미취학 아동	3,000원																																																
자원봉사자	무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목욕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이용편의 제공)</p> <p>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p> <p>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p>	<p>제7조(이용편의 제공)</p> <p>① 구청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p> <p>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p>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설치 및 운영)</p> <p>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p> <p>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2급 및 3급 등록장애인</p>	<p>제13조(설치 및 운영)</p> <p>⑤ (현행과 같음)</p> <p>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연회비 징수)</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회비의 전</p>	<p>제9조(연회비 징수)</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회비의 전</p>

<p>액을 감면할 수 있다.</p> <p>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p>	<p>액을 감면할 수 있다.</p> <p>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등)</p> <p>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p> <p>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2급 및 3급 장애인</p>	<p>제7조(사용료등)</p> <p>③ (현행과 같음)</p> <p>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p> <p>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p>	<p>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p>

<p>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가. (생략) 나.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p> <p>② ③ ④ (생략)</p>	<p>나.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p> <p>② ③ ④ (현행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별표] <b>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b> (제13조제3항 관련)</p> <p><b>2. 수강료</b> 나. 감면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감면대상</th> <th colspan="3">감면비율</th> </tr> <tr> <th>도서관일반 프로그램</th> <th>특기적성 프로그램</th> <th>외국어 프로그램</th> </tr> </thead> <tbody> <tr> <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td> <td rowspan="2">100%</td> <td rowspan="2">100%</td> <td rowspan="2">50%</td> </tr> <tr>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td> </tr> <tr> <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td> <td>70%</td> <td>70%</td> <td>30%</td> </tr> <tr> <td>「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신설 2019.3.28)</td> <td>50%</td> <td>30%</td> <td>30%</td> </tr> </tbody> </table> <p>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및 외국어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p>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100%	100%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70%	70%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신설 2019.3.28)	50%	30%	30%	<p>[별표] <b>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b> (제13조제3항 관련)</p> <p><b>2. 수강료</b> 나. 감면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감면대상</th> <th colspan="3">감면비율</th> </tr> <tr> <th>도서관일반 프로그램</th> <th>특기적성 프로그램</th> <th>외국어 프로그램</th> </tr> </thead> <tbody> <tr> <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td> <td rowspan="2">100%</td> <td rowspan="2">100%</td> <td rowspan="2">50%</td> </tr> <tr>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td> </tr> <tr> <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td> <td>70%</td> <td>70%</td> <td>30%</td> </tr> <tr> <td>「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신설 2019.3.28)</td> <td>50%</td> <td>30%</td> <td>30%</td> </tr> </tbody> </table> <p>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및 외국어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p>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100%	100%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70%	70%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신설 2019.3.28)	50%	30%	30%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100%	100%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70%	70%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신설 2019.3.28)	50%	30%	30%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100%	100%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70%	70%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신설 2019.3.28)	50%	30%	30%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중 장애인 등급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황은경 (☎3153-8872 )**